

강의제작 운영 지원 온라인 원격 도우미 운영 지침

소관부서: 교수학습지원센터

제정일: 2020.00.00.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나사렛대학교 원격강좌 강의제작 및 운영지원을 위한 「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 강의제작 및 운영지원 온라인 원격 도우미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활동) 강의제작 및 운영지원 온라인 원격 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장애(청각)학생용 자막 작성 및 동영상 편집 보조
2. Blended 수업용 강의 수업 보조 및 강의실 관리
3. 실시간 화상 수업 및 녹화 콘텐츠 제작 지원
4. 기타 원격강좌 운영 지원

제3조 (운영) 교내 원격강좌를 담당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제4조 (재원) 재원은 나사렛대학교 대학회계(국고보조금)로 한다.

제5조 (선발절차) 강의제작 운영지원 온라인 원격 도우미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1. 선발대상 :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자, 휴학생 및 재학생 중 시간제근로 주40시간 혹은 주20시간 근로가 가능한 자
2. 선발방법 : 공개채용(고용노동부 Worknet, 취업정보사이트, 나사렛대학교 홈페이지 등), 시간제근로자 포기시 여석에 한하여 학과장 추천

제6조 (교육) 선발된 강의제작 및 운영지원 온라인 원격 도우미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 (근무형태) 대상자는 시간제로 근무하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9:00~18:00, 주 20시간 근무의 경우 9:00~14:00 또는 14:00~18:00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복무관리) 대상자의 복무에 관한 제반 규정은 「근로기준법」, 대학 직원복무규정 등에 따른다.

제9조 (급여, 보험료 등) 급여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매월 초 5일 내로 대상자에게 급여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지급한다.

제7조 (기타사항) 이외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보고 후 시행한다.